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에이엠씨에프엔 보험대리점	1101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위드라이프경영지원 보험대리점	134811-*****	경기도 용인시

###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주)에이엠씨에프엔 보험대리점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주)에이엠씨에프엔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이○)은 2021년 상반기에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제87조의3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400만원

처분 대상자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주)위드라이프 경영지원 보험대리점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주)위드라이프경영지원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양○○)은 2021년 상반기에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7조의3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400만원

#### 나. 유의사항

- 본 과태료 부과통지의 효력발생일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등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